

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90일
신청인	제작자명	제작자등록번호	
	대표자명	대표자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자동차	차명	형식/생산대수	
	차종	원동기형식	
	최초제작자명(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	제작국가(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	
	최초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(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	차대번호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. 자동차의 외관도(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) 3.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